



제435회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운영 및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설립〉
■ 허종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105호)

2026. 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 성 소 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운영 근거 신설	2
2.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설립 근거 신설 등	6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허종식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6. 1. 16.
3. 회부연월일 : 2026. 1.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간편결제 시장의 확대로 소비자의 결제 방식이 모바일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음. 중소벤처기업부와 서울시 등은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을 도입하고,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 이를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과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의 사업 수행에 관한 위탁 근거가 미비하여 사업의 안정적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정부의 관리·감독 권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그 운영 주체인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 2부터 제9조의5까지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운영 근거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9조의2(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하여 우대수수료를 적용하는 모바일 결제 서비스로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 전자지급수단 중 직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한 계좌기반의 간편결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그 자료 또는 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 중 사업자의 매출액, 사업자등록 정보: 국세청장 2. 상시근로자 수 정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의 이사장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제9조의3에 따른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 제공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유·이용하는 자료·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리고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매출액 등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국세청장 등에게 요청하고, 그 자료 또는 정보를 보유·이용하고 한국
간편결제진흥원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행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
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 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
도록 규정하고 있음¹⁾).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결제 중간단계를 최소화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제로페이)²⁾³⁾⁴⁾ 사업을 2018년에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2019년부터 전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1193호, 2025. 12. 2., 일부개정)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
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자문 및 교육
 2.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인력·판매·수출 등의 지원
 3.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4. 소상공인 온라인 공동 판매 플랫폼 구축 지원
 5.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
 6. 소상공인에 대한 인공지능 기술 활용 지원
 7. 소상공인에 대한 에너지 효율화 지원
 8. 소상공인의 출산·육아 및 일·가정 양립의 지원
 9.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2) ‘간편결제 서비스’란 이용자가 미리 결제 수단, 즉 카드 정보나 계좌 정보를 입력해두고 지문인
식, 비밀번호 입력 등의 본인인증만으로 결제를 실행하는 서비스를 뜻함(조영은,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 시장의 현황과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보(통권 40호), pp.40-43, 2019.4.).
- 3) 2025년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을 이용하는 소상공인가맹점 수수료율(직불)은 연매
출액 8억원 이하는 0%, 8억원 초과~12억원 이하는 0.3%, 12억원 초과~30억원 이하는 0.5%가
적용됨. 일반가맹점(연매출액 30억원 초과) 수수료율은 1.2%임.
- 4) 동 사업의 추진체계는 다음과 같음. 제로페이의 운영, 관리 등은 민간사업자들의 출연을 통해
설립된 (재)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서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정책수립, 제도개
선 및 예산을 지원하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보조사업자로서 보조금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간접보조사업자인 (재)한국간편결제진흥원의 사업진행을 관리·감독함(국회예산정책처, 「2021
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pp.350-359, 2022.8.). 동 사
업은 2023년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았으나, 2024년 이후 국고 지원은
중단되었음.

국으로 확대·운영하였으며, 2026년 5월 10일 기준 누적 가맹점 수는 2,157,473개사⁵⁾에 달하고 있음.

개정안에 따라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운영의 근거가 마련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동 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매출액 등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아 보유·이용하고 그 자료 또는 정보를 한국간편결제진흥원⁶⁾에 제공할 수 있게 되면, 상시 근로자 수 파악을 통한 소상공인 해당 여부의 판단이나 매출액 규모에 따른 수수료율의 차등 적용 등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 제9조의2제3항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국세청장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유사 입법례⁷⁾를 참조하여 한국간편결제진

5) 출처: 제로페이 가맹점 홈페이지(www.zeropay.or.kr)

6)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은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설립(2019. 9. 11.)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으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의 운영기관임.

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정보 제공 요청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재정 지원(이하 “소상공인재난지원”이라 한다)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재난지원의 대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각호 생략)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재난지원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거나 제2항에 따라 처리한 자료 또는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공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는 소상공인재난지원의 처리를 위하여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로 한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하여 소상공인재난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처리하는 자 및 제3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 법에 따른 소상공인재난지원 관련 업무 외의 목적으로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할 수 없다.

⑤ 제3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 법에 따른 소상공인재난지원 관련 업무

홍원에 제공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를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의 업무에 관련된 정보로 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또한,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운영 관련 업무 외의 목적으로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을 둘 필요가 있어 보임.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수료 부담이 낮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도입 당시 민간이 사업 추진을 주도하고 정부는 인프라(QR키트⁸⁾) 보급을 담당하였는바, 시장의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으려는 제도 도입 취지를 감안하여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그리고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도입 당시와 달리 현재 민간 간편결제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는 점⁹⁾을 고려할 때 정부가 운영하는 간

종료 시 지체 없이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파기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제공된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제2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제공받은 정보를 이 법에 따른 손실보상 관련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2. 제2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 따른 소상공인재난지원 관련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② 연합회가 제27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QR키트는 가맹점에 비치하는 QR결제용 도구 세트로서, 스탠드형 QR 결제판·가맹점 안내 스티커·가맹점 약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조페이 가맹점 신청 시 최초 1회 자동배송됨.

9)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중 간편지급(간편결제) 서비스 이용규모는 일평균 3,378만

편결제서비스의 시장 진입은 과도한 개입으로 비칠 우려가 있으며, 민간 간편결제서비스에 비해 이용률이 낮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¹⁰⁾에 대한 재정 투입¹¹⁾의 효과성에 의문이 있다는 의견임.

참고로,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운영 및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의 설립 근거 등을 마련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의원 대표발의)¹²⁾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개정안 심사 시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음.

2.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설립 근거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신설>	제9조의3(한국간편결제진흥원의 설립) ①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하

건, 1조 464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13.7%, 11.4% 증가하였으며, 2025년 6월말 기준 간편지급(간편결제) 서비스 조사대상 업체는 59개에 달함(출처: 한국은행 보도자료, “2025년 상반기 중 전자지급서비스 이용현황”, 2025. 9. 29.

10)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제로페이 이용규모는 일평균 10만건, 43억원으로, 전체 간편결제 서비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0.3%, 0.4% 수준임.

11) 중소벤처기업부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제로페이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QR키트 등) 보급에 506억원의 국고 지원이 투입되었다고 설명함.

12) 의안번호 제2206023호(제안일자: 2024. 11. 28.), 현재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계류 중(소위 회부일: 2025. 2. 19.)

며, 진흥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원 또는 지부,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센터 및 그 밖의 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2.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을 통하여 거래대금을 지급 받을 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

3.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운영에 참여하여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의 모집 및 관리

4.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을 이용한 부가서비스의 개발

5.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을 활용한 모바일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6.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거래정보 등을 활용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7.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조사, 연구 및 홍보

8.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개발, 시스템 구축, 경영·서비스개선 및 교육

9.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목적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 제2호 및 제8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진흥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그 업무·회계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는 등 지도·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⑦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⑧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간편결제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⑨ 그 밖에 진흥원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4(한국간편결제진흥원의 이사회) ①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진흥원의 정관으로 정한다.
<신 설>	제9조의5(온누리상품권 및 지역사랑상품권에 관한 특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디지털 결제 인프라를 진흥원으로 하여금 제공하게 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따른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의 디지털 결제 인프라를 진흥원으로 하여금 제공하도록 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30조(과태료)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1. 2. (생 략) ③ (생 략)	제30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300만원-----. 1. 제9조의3제8항을 위반하여 한국간편결제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3.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을 설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리고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을 이용하는 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개발 등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디지털 결제 인프라를 한국결제진흥원이 제공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에 따라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의 설립 근거가 마련되고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을 이용하는 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게 되면,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개발 등 사업을 안정적·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개정안 부칙에서는 현재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간편결제진흥원(구법인)¹³⁾이 이사회 의결로 개정안에 따라 설립되는 한국간편결제진흥원(신법인)으로 하여금 구법인의 재산과 권리·의무 등의 승계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경과조치를 두고 있는바, 현재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간편결제진흥원과의 동일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13)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은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설립(2019. 9. 11.)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으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의 운영기관임.

다만, 개정안 제9조의3제5항에서는 제9조의3제4항에 따라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 중 ①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을 통하여 거래대금을 지급받을 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와 ②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개발, 시스템 구축, 경영·서비스개선 및 교육의 사업에 대해서만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안 제9조제4항제2호 및 제8호),

개정안의 취지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을 감안할 때 그 외 사업에 대한 비용 보조의 필요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한편, 개정안 제9조의5에서는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의 디지털 결제 인프라를 제공하게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을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기존에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의 결제 인프라 보급 등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단체와의 기능 중복에 따른 비효율 발생 우려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판매대행점 요건¹⁴⁾ 예외에 대

14)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판매대행점”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6조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관·판매·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한 특례 규정을 이 법에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해 보임.

중소벤처기업부는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은 민간이 주도하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 운영을 위하여 설립된 민간기관으로, 정부 예산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바, 기관의 설립 취지 및 현재 간편결제 시장에서의 제로페이 활용도 등을 감안할 때 법정기관화의 필요성은 낮다는 입장임.

또한,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은 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에게 상품권의 판매대행, 발행 및 운영 등을 위탁¹⁵⁾¹⁶⁾¹⁷⁾하고 있고, 공모를 통해 선정된 수탁기관에서 자체 개발 등을

1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21204호, 2025. 12. 16.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판매대행자”란 중소기업부장관 또는 제71조제2항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발행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발행업무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제26조의10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여 온누리상품권의 보관·판매·회수·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제26조의10(온누리상품권의 판매대행 협약의 체결 등) ① 판매대행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중소기업부장관 또는 발행업무수탁기관의 장과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부장관 또는 발행업무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경우 판매대행자에 관한 정보를 중소기업부 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자는 온누리상품권의 판매량·재고량·회수량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부장관 또는 발행업무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중소기업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조, 제9조, 제17조,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및 제70조의2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상인회, 연합회 및 공단의 대표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중소기업부장관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업무의 위탁) ① 중소기업부장관은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지원효과평가
2. 법 제9조에 따른 시장 및 상점가의 실태조사

통해 디지털 결제 인프라를 구축하여 관련 서비스를 제공 중¹⁸⁾이라고 설명함.

재정경제부는 간편결제서비스 시장은 민간이 경합하는 시장으로,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을 설립할 경우 민간부문이 위축되고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할 우려가 있고,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 온누리상품권 및 지역사랑상품권의 디지털 결제 인프라를 제공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경우 민간업체와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임.

행정안전부는 현재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의 발

2의2. 법 제26조의2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3. 법 제27조에 따른 판로촉진과 홍보지원

4.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상인에 대한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지원

5. 법 제29조에 따른 산학협력사업 등에 관한 지원

16)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판매대행점”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6조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관·판매·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제6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① 판매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지역사랑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7) 지역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는 한국간편결제진흥원, KT, 코나아이 등 14개사임.

18)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한국조폐공사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통합운영 대행기관으로 선정되어 관련 플랫폼 구축에 자체예산 110억원을 투입 중임.

행 및 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그에 따른 위탁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별도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465